

대원논문집 투고규정

제정 : 1996.03.01
개정 : 1998.10.01
개정 : 1999.10.08
개정 : 2001.09.01
개정 : 2012.07.22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대원논문집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심의사항) ① 대원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논문 편집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② 위원회는 논문 편집 위원장 1인과 논문 편집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함) 10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논문 제작에 관한 사항 <신설 2014.11.01.> <개정 2021.12.01.>
2. 논문 편집에 관한 사항 <신설 2014.11.01.> <개정 2021.12.01.>

제3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4조(투고자격) ① 대원논문집의 투고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 <개정 2012.07.22., 2014.11.01., 2021.12.01.>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명의로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<개정 2012.07.22.>
2. 산업체 경력자 : 석사학위 이상으로 산업체 경력 5년 이상인 자(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제출) <개정 2021.12.01.>
3. 기타 - 박사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(졸업, 재학증명서 제출)

③ 이외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④ 본 대학교 및 타 기관의 연구비 지원으로 제출한 공동 연구보고서도 본 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5조(투고책임) 본 대학교 논문집에 게재할 원고는 타 논문집에 발간되지 않은 독창성 있는 원고에 한 한다.

제6조(교정책임) 본 대학교 위원회에서는 채택된 원고를 심사하여 투고자에게 교정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원고매수) 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초록(Abstract), 도표 등을 포함해서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로 한다.

제8조(논문집 발행회수) 원고는 교무처에 접수하며, 논문의 발행은 년 1회로하고 원고 접수기간은 별도 통보한다. 다만, 논문집 발간 월. 일은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>

제9조(원고작성) ① 원고작성 기준은 제목 16point, 저자명 11point, Abstract 11point, 서론명칭 13point, 본문 10point, 표 및 그림제목 10point(국문명칭 및 영문명칭), 주 8point, 글자모양 신명조, 줄간격 170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용지의 여백은 A4 기준으로 위·아래여백 5cm, 좌·우여백 3.5cm에 준하여 작성하여 출력물 1부와 저장매체(CD, USB)를 함께 제출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② ABSTRACT는 영문 및 번역문을 각 1부씩 제출한다. (다만, 본문이 영문으로 된 논문은 한글 초록만 제출한다.)

제10조(논문) 논문은 CD로 제작하여 투고자에게 제공하며,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자가 부담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제11조(논문구성) 논문 장, 절 표시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택일한다.

| | | 論文題目 | 國漢文 (英文) | | | 論文題目 | 國漢文 (英文) |
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姓 名 | 漢文 (英文) | | | 姓 名 | 漢文 (英文) |
| I. | 序論(漢文) | | | 1. | | 序論(漢文) | |
| II. | 本論(漢文) | | | 2. | | 1) | |
| | 1. | | | | | 2) (1) | |
| | 2. 가. | | | | | (2) ① | |
| | 나. 1) | | | | | ② | |
| | 2) 가) | | (1) | 3. | | | |
| | 나) (2) | | (2) | 4. | | | |
| III. | 結論(漢文) | | | 5. | | 參考文獻 | |
| | 參考文獻 | | | | | 1. | |
| | 1. | | | | | 2. | |
| | 2. | | | | | | |

제12조(참고문헌 표시) 참고문헌 기재방법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며, 본문에 인용 표시는 문구우측어깨에 인용된 차례로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낸다. 1) 2) 3) <개정 2021.12.01.>

1. 일반, 인문, 사회, 과학 서적

가. 국내서적 A - 연번호, 저자명, 서명, 출판사명, 년도, 페이지수

Ex. 1. 김문일, 금속조직학, 박영사, 1976, pp. 62-132.

2. 김재은, 행동의발달, 현대사, 1968.

나. 일본서적 - 위와 동일한 순서로 하되 원명 그대로 표기함.

다. 영어서적 - 위와 동일한 순서로 하되 저자명은 성, 이름 순으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하기 위해 밑줄 표시함.

Ex. Chomsky. Noam. The Sound Pattern of English. New York : Harper and Row 1968. pp. 22-101.

2. 논문집, 학회지, 정기간행물 - 연번호. 저자명. “논문 제목” 발표지명, 권 및 호수, 년도, 페이지 <개정 2021.12.01.>

Ex. 1. 심원섭, “P함수에 의한 논리 설계에 관한 연구” 경기개방대논문집, 제22집, 1985, pp. 269-278

2. Swanson. Don, "Dialogue with a Catalogue. " Library Quarterly 34. 1978, pp. 25 - 40.

3. Berteaux, H. O., "Design of Deep Sea Mooring Lines. "Marine Technology Society Journal. Vol. 4, No. 3, May, 1970.

4. Phillips, O. C. , "The Influence of Ovid, " ph. D. dissertation.

3. 단행본, 학위논문 - 참고문헌의 기재시 연번호순서는 가급적 저자명 첫 자의 가나다

순으로, 영문은 A B C순으로 하거나 또는 본문 인용순으로 함. <개정 2021.12.01.>

제13조(그림 표시) 그림, 도표는 반드시 트레이싱페이퍼를 사용하여 도표는 Table로 표기하여 상단 좌편부터, 그림은 Fig. 로 표기하여 하단 중앙에 균형 잡히게 기재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4조(영문제목 표시) ① 영문제목은 전치사, 관사, 접속사 외는 단어마다 첫 자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문자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Ex. The Determination of the Coefficient of Permeavillity by Means of Rowe and Ceil.

② 영문이름은 성 다음에 콤마를 찍고 이름은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각 음절 첫 째자만 대문자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Ex. Kim, Man-Dong

제15조(배포) 발간된 대학교논문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타 기관(국립도서관, 각 대학교 도서관, 기타)에 배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16조(기타) 특별한 규정이 없는 논문투고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 집행한다. <개정 2014.11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